

KDB Capital

중고 자동차 대출 약정서



Contents

중고 자동차 대출 신청서	1
중고 자동차 대출 약정서	5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6
대출금 지급 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	9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3
고객정보 취급방침	14
여신거래 기본약관	15
CMS 출금이체 신청서	17
자동이체 약관	18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I	19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II	2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23
위임장(금전소비대차 등)	25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7
위임장	28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29

대출번호: _____ 대출일자: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담당자	검토자	전결권자

1. 고객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공통필수 기재사항	※ 아래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자택주소(실거주지) <small>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small>	전화번호	
	자택주소(주민등록지) <small>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small>	이메일주소	@
	청구수수료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납입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실제 소유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업자용 대출인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자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연월일	년 월 일
업태 / 종목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규정한 65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보호 대상 금융소비자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상기항목의 해당자로서 금융거래 중 발생가능한 중도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부담사항, 기한이익상실 기준 등의 불이익사항을 안내받았으며,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성명: (인)			
상품별 필수 기재사항	※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로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작성)		
	직장(상호)명	부서명	직위
	직장(사업장)주소 <small>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small>	직장(사업장)전화번호	
	재직(사업)기간	연소득	직종

2. 고객님의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공통필수 기재사항	※ 아래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합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small>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small>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연월일	년 월 일
	청구지수료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납입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법인업무 담당자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3. 선택 기재사항 (아래 선택 기재사항은 대출 약정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상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대주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단독
주거소유현황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 <input type="checkbox"/> 가족소유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반전세(전세+월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결혼유무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미혼
◆ 본인 결제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는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예금주명	(인) 예금주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 자동이체약관을 준수하고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4. 기타사항

외국인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
-----	----	---------	---

본인은 대출 상품 신청을 위한 상기 신청서의 항목과 구비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자동이체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약관을 준수하고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성명: _____ (인)

중고차 판매자	성명:
	주소:
제휴점	

접수자 확인	대출신청인(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에게 약정내용을 충분히 설명 고지 하였으며, 자필기재 및 날인하였음을 확인함
	(서명)



대출번호 : _____ 대출일자 :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담당자	검토자	전결권자

1. 고객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공통필수 기재사항	※ 아래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자택주소(실거주지) <small>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small>	전화번호	
	자택주소(주민등록지) <small>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small>	이메일주소	@
	청구서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납입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실제 소유자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사업자용 대출인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자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연월일	년 월 일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확인사항 ■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규정한 65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보호 대상 금융소비자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 본인은 상기항목의 해당자로서 금융거래 중 발생가능한 중도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부담사항, 기한이익상실 기준 등의 불이익사항을 안내받았으며,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 (인)			
상품별 필수 기재사항	※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로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작성)		
	직장(상호)명	부서명	직위
	직장(사업장)주소 <small>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small>	직장(사업장)전화번호	
	재직(사업)기간	연 소 득	직 종

2. 고객님의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공통필수 기재사항	※ 아래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 대출 약정이 가능합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small>가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small>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연월일	년 월 일
	청구지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납입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제일
법인업무 담당자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3. 선택 기재사항 (아래 선택 기재사항은 대출 약정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상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대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단독
주거소유현황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 <input type="checkbox"/> 가족소유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반전세(전세+월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결혼유무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미혼
◆ 본인 결제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는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예금주명	(인) 예금주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 자동이체약관을 준수하고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4. 기타사항

외국인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
-----	----	---------	---

본인은 대출 상품 신청을 위한 상기 신청서의 항목과 구비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자동이체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약관을 준수하고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인)

중고차 판매자	성명:
	주소:
제휴점	

접수자 확인	대출신청인(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약정내용을 충분히 설명 고지 하였으며, 자필기재 및 날인하였음을 확인함
	(서명)



중고 자동차 대출 약정서 (금융회사용)

◎ 고객확인업무에 따른 공지

산은캐피탈(주)와의 거래계약(거래관계 유지 및 향후 계약 거래계약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고객의 불충분한 정보제공이나 정보제공 거부로 인해 고객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개인고객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외국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주소 또는 연락처), 직업, 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법인고객의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회사(단체)명, 실명번호, 본점/사업장 설립지 및 소재지 (외국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정보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하여 확인), 회사 연락처, 업종, 설립목적 (비영리 법인의 경우), 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영등포세무서장 후납승인 13년 7호	인지세 납부내역 대출금 • 5천만원 이하 : 면제 •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대출번호 : _____
 대출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검토자	전결권자

차량정보	차 명	모 델 연 도			구 입 가 격	(VAT포함) 원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인 도 시 기	
대출조건	정상 대출금	금	원정 (₩)	연 %	개월	□원리금균등 □원금만기일시 □기타()
	유 예 대출금	금	원정 (₩)	연 %	개월	□만기일시 □기타()
	거 처 대출금	금	원정 (₩)	연 % (거 처 %)	□()개월 거 처 후 ()개월 원리금균등상환	
	기 타 대출금	금	원정 (₩)	연 %	개월	□원리금균등 □원금만기일시 □기타()
	총 대 출 금	금	원정 (₩)	실질이자율 연 %	지연배상금율 연 %	
	중도상환수수료율	%	첫 회 납 입 일	년 월 일	월 원 리 금	원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1%)×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인지세납부금액	원 (고객 부담비율 50%)				
	담 보	차량설정여부	□Y □N	설 정 금 액	원정(대출금액의 %)	
연대 보증인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일 때(1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무한책임사원				
	자동차구입일 때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 □생업영위목적 차량구입				
기타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					
	※ 보증종류	□특정근보증 : 당해채무(기한연장·증액포함) □한정근보증 : 특정 + 동일종류신규대출(법안만 가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기급적도로명 주소로 작성	전 화 번 호			
	직장(사업자)명	부 서 / 직 위	/	재직(사업)기간		
	직장(사업장)주소	기급적도로명 주소로 작성	직장(사업장)전화번호			
보증내용	보증채무최고액	원			보 증 기 간	개월
	※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의 130%입니다.(단, 장애인·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본인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인 기본사항 및 대출조건, 고객정보 취급방침, 기타 고지 사항, 그리고 중고 자동차 표준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산은캐피탈주식회사와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중고 자동차 표준약관, 고객정보 취급방침,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겸 채무자
 (서명/인)

연대보증인
 (서명/인)

금융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 칙

이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이라 합니다)와 이용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2. "중고 자동차(이하 "중고차"라 합니다)"란 신규로 제조된 자동차(新造車)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중고차 대출(이하 "대출"이라 합니다)"이란 금융회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중고차 판매직원"이란 그 명칭 등에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 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채무점" 직위로 봅니다.
 5. "채무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해피콜"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지급 등 중고차 대출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채무자 본인에게 우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제3조(대출의 신청 등)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채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금융회사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채무점 또는 중고차 판매직원(제2조제4호에 따라 채무점 직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금융회사 및 채무점 직원 등은 채무자의 대출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합니다.

1. 중고차 판매자·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 중고차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요율
 4.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5.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 ④ 금융회사 및 채무점 직원은 대출신청서 채무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대출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 녹취, 우편, 이메일, 전자자등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조건 등에 대한 설명내용을 해피콜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무점 및 채무점 직원의 정보(채무점명, 채무점 주소, 채무점 전화번호, 채무점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문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선택한 방법으로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채무점 또는 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채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등(전자문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정보통신법 관련 일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채무자에게 우선,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②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모두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③ 대출금의 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중고차 구입비용과 이전등록 비용,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에 포함됩니다.

제5조((근)저당권의 설정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상환이 완료될 경우 대출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해지방법, 미해지시 불분한 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확인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2.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 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다. (근)저당권 설정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라.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구분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감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 또는 채무점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대출계약의 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등 부담 없이 10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또는 채무점(제2조제4호에 따른 채무점직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출 이자와 및 대출원리금 등 대출조건을 하위로 안내하는 경우
2.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즉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대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대여,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한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연대보증)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영역) 등록
2.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의 차량구입
3. 제항 및 제2항 외에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제 3 장 대출금의 상환

제10조(지연배상금) ①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부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2조(대출금리 인하여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급 등 채무자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일 직장 내 채무자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4. 채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채무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7. 채무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나. 채무자의 회계상 등급이 상승한 경우
 - 다. 채무자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 라. 채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8. 기타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자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②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 본인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채무자는 이 약정사상 기재된 대출기간의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고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제1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4 장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의 변경

제1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사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변경사항 통지를 부담하게 지어진 경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5조(채무점의 개인정보 관리) ① 채무점은 대출신청이 완료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② 채무점은 당해 중고차 대출업무 외에 채무자의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채무점은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점과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
- 제17조(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회사는 변경 전 최소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채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 ② 채무자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계약하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대출금 및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환하고 대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③ 채무자가 변경예정일(기)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9조(채권의 양도) ① 금융회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관계법규(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를 포함한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사전양도 예정일(양도) 14영업일 전) 또는 시후(양도 계약종료일 후 14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다는 사실(대출원금, 연체이자, 비용,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1회 이상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0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1조(채권 관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20년 11월 9일 이후 신은캐피탈주식회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중고자동차 대출부터 적용한다.



중고 자동차 대출 약정서 (고객용)

◎ 고객확인 의무에 따른 공지

산은캐피탈(주)와의 거래계약(거래관계 유지 및 향후 계약 거래계약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고객의 불충분한 정보제공이나 정보제공 거부로 인해 고객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개인고객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외국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주소 또는 연락처), 직업, 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법인고객의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회사(단체)명, 실명번호, 본점/사업장 설립지 및 소재지 (외국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정보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하여 확인), 회사 연락처, 업종, 설립목적 (비영리 법인의 경우), 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영등포세무서장 후납승인 13년 77호	인지세 납부내역 대출금 • 5천만원 이하 : 면제 •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대출번호 : 대출일자 : 20 년 월 일	담당자	검토자	전결권자
---	--	------------------------------------	-----	-----	------

차량정보	차 명	모 델 연 도		구 입 가 격		(VAT포함) 원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인 도 시 기		
대출조건	정상 대출금	금	원정 (₩)	연 %	개월	□원리금균등 □원금만기일시 □기타()
	유 예 대출금	금	원정 (₩)	연 %	개월	□만기일시 □기타()
	거 처 대출금	금	원정 (₩)	연 % (거 처 %)	□()개월 거 처 후 ()개월 원리금균등상환	
	기 타 대출금	금	원정 (₩)	연 %	개월	□원리금균등 □원금만기일시 □기타()
	총 대 출 금	금	원정 (₩)	실질이자율 연 %	지연배상금율 연 %	
중도상환수수료율	% 첫 회 납 입 일		년 월 일	월 원 리 금	원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1%)×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 합니다.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인지세납부금액	원 (고객 부담비율 50%)					
담 보	차량설정여부	□Y □N	설 정 금 액	원정(대출금액의 %)		
연대 보증인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일 때(1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무한책임사원				
	자동차구입일 때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 □생업영위목적 차량구입				
기타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					
	※ 보증종류 □특정근보증 : 당해채무(기한연장·증액포함) □한정근보증 : 특정 + 동일종류신규대출(법안만 가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기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			전 화 번 호		
직장(사업자)명	부 서 / 직 위		/	재직(사업)기간		
직장(사업장)주소	기급적 도로명 주소로 작성			직장(사업장)전화번호		
보증채무최고액	원		보 증 기 간	개월		
※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의 130%입니다.(단, 장애인·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본인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인 기본사항 및 대출조건, 고객정보 취급방침, 기타 고지 사항, 그리고 중고 자동차 표준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산은캐피탈주식회사와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중고 자동차 표준약관, 고객정보 취급방침,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겸 채무자 (서명/인)	연대보증인 (서명/인)	금융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제 1 장 총 칙

이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이라 합니다)와 이용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2. "중고 자동차"라 함은 "중고차"라 합니다. "신"은 새로운 자동차(新造車)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중고차 대출"이라 "대출"이라 합니다. "이"란 금융회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중고차 판매직원"이란 그 명칭 등에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 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채우점" 직원으로 봅니다.
 5. "채우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해피콜"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지급 등 중고차 대출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채무자 본인에게 우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제3조(대출의 신청 등)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채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금융회사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채우점 또는 중고차 판매직원(제2조제4호에 따라 채우점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 ③ 대출금 지급 및 채우점 직원 등은 채무자의 대출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합니다.
1. 중고차 판매자·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 중고차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요율
 4.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5.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 ④ 금융회사 및 채우점 직원은 대출신청서 채무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대출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 녹취, 우편, 이메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조건 등에 대한 설명내용을 해피콜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우점 직원 또는 채우점 직원의 정보(채우점명, 채우점 주소, 채우점 전화번호, 채우점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문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선택한 방법으로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채우점 또는 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채우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등에(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정보통신법 관련 일체를 준수해야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채무자에게 우선,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 ②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모두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 ③ 대출금의 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중고차 구입비용과 이전등록 비용,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에 포함됩니다.

제5조((근)저당권의 설정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상품이 원료될 경우 대출신청이 원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해지방법, 미해지시 불발한 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확인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2.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 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다. (근)저당권 설정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라.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구분
- ② 인지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감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 또는 채우점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대출계약의 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등 부담 없이 10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또는 채우점(제2조제4호에 따른 채우점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출 이자와 및 대출원리금 등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2. 대출신청이 원료된 후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즉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대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대여,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한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연대보증)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영양의 등록
 2.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의 차량구입
- ③ 제항 및 제2항 외에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제 3 장 대출금의 상환

제10조(지연배상금) ①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부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2조(대출금리 인하여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급 등 채무자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일 직장 내 채무자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4. 채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채무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7. 채무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나. 채무자의 회계상 등급이 상승한 경우
 - 다. 채무자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 라. 채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8. 기타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자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②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 본인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문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채무자는 이 약정사항 기재된 대출기간의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고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제1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4 장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의 변경

제1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사항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변경사항 통지를 부담하게 지어진 경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5조(채우점의 개인정보 관리) ① 채우점은 대출신청이 원료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② 채우점은 당해 중고차 대출업무 외에 채무자의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채우점은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우점과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

제17조(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회사는 변경 전 최소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채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문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계약하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대출금 및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환하고 대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③ 채무자가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9조(채권의 양도) ① 금융회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관계법규(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를 포함한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사전양도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전) 또는 사후(양도 계약완료일 후 14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다는 사실(대출원금, 연체이자, 비용,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1회 이상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0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1조(채권 관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분점 또는 그 채권관리사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분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20년 11월 9일 이후 신은캐피탈주식회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중고자동차 대출부터 적용한다.



담당자	검토자	전결권자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귀사와의 중고 자동차 대출 약정에 있어서 본인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다음의 대출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서류 제출 및 관련사항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대출금의 지급 방법

대출금 지급시 아래 예금주(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따라 귀사가 해당 대출금을 지급한 시점에 '본인'은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I	금 액	금 원정(₩)		
	입 금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수령인 II	금 액	금 원정(₩)		
	입 금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2. 대출서류 제출 및 관련사항 위임


위 임	대 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본인이 대출 약정 및 보증을 설정함에 있어 관계된 서류제출 및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귀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겸 채무자



(서명/인)

연대보증인



(서명/인)



담당자	검토자	전결권자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귀사와의 중고 자동차 대출 약정에 있어서 본인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다음의 대출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서류 제출 및 관련사항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대출금의 지급 방법

대출금 지급시 아래 예금주(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따라 귀사가 해당 대출금을 지급한 시점에 '본인'은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I	금 액	금 원정(₩)		
	입 금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수령인 II	금 액	금 원정(₩)		
	입 금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2. 대출서류 제출 및 관련사항 위임

위 임	대 리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본인이 대출 약정 및 보증을 설정함에 있어
관계된 서류제출 및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귀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겸 채무자

(서명/인)

연대보증인

(서명/인)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당해 금융회사가 금융 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당사 실(지점)
전화번호 : 02-6330-0114
홈페이지 : <http://www.kdbc.co.kr>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부산지점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한국산업은행 8층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당사 실(지점)
전화번호 : 02-6330-0114
홈페이지 : <http://www.kdbc.co.kr>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부산지점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한국산업은행 8층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연락처 : 02-6330-0114(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여신금융협회 개인정보 보호인 연락처 : 02-2011-0728/0745(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국번없이)1332(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당사 실(지점)
전화번호 : 02-6330-0114
홈페이지 : <http://www.kdbc.co.kr>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부산지점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한국산업은행 8층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http://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02-3771-1000 인터넷 (<http://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55-5000 인터넷 (<http://www.sci.co.kr>)
- 한국개인신용(주) : ☎ 02-708-1000 인터넷 (<http://www.kcb4u.com>)

바. 본인정보의 유출 시 피해보상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당사 고객 정보관리·담당자 연락처 : 02-6330-0114, 0357
- 협회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연락처 : 02-2011-0728, 0745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연락처 : 02-3145-7111

고객정보 취급방침

산은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은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약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가. 예약한 금전의 총액
 - 나. 예약한 증권의 총액
 - 다. 예약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약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산은금융그룹은 산은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 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 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고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약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약한 금전의 총액
 - 나. 예약한 증권의 총액
 - 다. 예약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약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금융지주회사 등의 상호 및 업종

산은금융그룹의 회사는 산은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은행업), 대우증권(금융투자업), 산은캐피탈(여신전문금융업), 산은자산운용(집합투자업),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집합투자업)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제공처

산은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입니다.

IV.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산은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편의가 예상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시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고객의 정보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은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자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도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충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충·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충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물·계산방법 및 채무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별첨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의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물은 거래계약에서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물을 변경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물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시장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물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물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별첨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물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시장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제2항의 채무기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변경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시장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발행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⑧ 제2항의 채무기간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호에 따른 기한전의 이익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을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⑨ 제2항의 지연배상금액은 "대우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신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 약정이자율은 없는 경우 "상장",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연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기준금리 기준 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저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발행 또는 기한이의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② 제4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민권, 상법 제262조(상사법정이자율범위)연6%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사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등 유익하도록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 ① 채무자(개인)에 한함)의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사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주거금융예외(영양정리)등
 4. 위약금과 위탁대출 및 기타 할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 ③ 제4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한 날부터 이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제하, 운영에 필요한 사실을 이용하여 기타 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철회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신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회기 이송수수료
- ④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⑥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에 의하여도 전용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 허용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에서 직접변제에 중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에 준하여 중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매되지 어려울 사유가 있는 경우
 3. 공경시대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경가격의 상환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신청한 예술품매각대금 이송을 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

용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인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중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5.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 ④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의 영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정식 여허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 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대리인, 고임용인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자)구입시 공동영양로 등록 나. 영양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로·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주사, 건축주, 시행사 및 공사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취득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공사사의 대표자 라. 법인이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임하는 경우
 - ③ 제2항제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거나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우면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반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⑦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실시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 ① 채무자가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야 하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가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담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공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한경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기한일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가 활동자(채무자)인 경우 담보 제공을 중단할 경우 등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한일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기한일 경우 7영업일)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로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한일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한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기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3. 분할상환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기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위를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채무, 임유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채무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이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 제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임유·채납정산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2항 제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이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2호, 제2호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간헐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산회사의 합병, 누사법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정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우면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연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특정보등 등록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상대)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호 제항, 제8호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충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영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임의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등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설물 등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 할 때
- ⑤ 제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보증인이 지칭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2조 제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지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이익 상실사유가 종료되거나 인내의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제2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2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표시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문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 (할부거래법상 철화·양권권 인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화·양권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문 문자메시지로 철화·양권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예시전문금융법 제50조의11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언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채무에 대하여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로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2조 제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2조 제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에 정한 기일에 금회한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이행일까지의 할인로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2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2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 기일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③ 제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2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상관 없이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한 금회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 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 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제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상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만 만기일까지 할인로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제2항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제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회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 ⑤ 제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기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항과 같습니다.
-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각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2조, 제3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상당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중단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록, 이자, 원금의 손서로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중단수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자의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

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칭하는 손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중단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칭하는 손서에 따른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채권의 나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상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칭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가 변제중단수서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상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중단지정)

-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칭하는 손서에 따라 상계에 중단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항의 상계중단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상당할 채무를 지칭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열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할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항의 분실·손상·열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면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② 제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요력)

-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로 한 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전달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위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그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용자조건에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제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지정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권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여신한다. 여신인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는 제항에 의하여 여신한다. 여신인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의 제기할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다. 여신인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 제출되는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⑤ 금융회사는 제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조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인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타점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하고,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를 알려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제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 ① 이 약관에 타점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를 위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CMS 출금이체 신청서

수 납 기 관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	202-81-50051
신 청 인		신청인 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신청인 휴대번호	

은 행 명		출금 계좌 번호	
예 금 주 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번호	

* 통장사본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니 올바른 연락처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고 뒷면의 자동이체약관을 준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예 금 주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인 또는 서명

- 주) 1.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 3. 주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 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 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I

아래의 동의사항은 대출계약 설정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아래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신용관련 통계, 모형 개발 등 포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data
- ② 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③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④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⑤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⑥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이하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보유·이용하되, 최장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 또는 협회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파기 및 보관 기준을 따름)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겸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서명/인
연대보증인	성명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서명/인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 조회 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신용관련 통계, 모형 개발 등 포함)

■ 조회동의 효력기간

귀하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 종료일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나,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모형개발 등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보유·이용기간 동안 유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겸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서명/인
연대보증인	성명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서명/인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II

아래의 동의사항은 대출계약 설정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아래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본 (금융)거래 및 이전 발생 (금융)거래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신용 관련 통계, 모형개발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업무처리 수탁업체 제공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서서류대행업체, 차량 등 담보물관리/평가 업체, 유가증권 평가업체, 본인인증업체, 신청서 등 문서 관리 업체(입력·스캔·보관·폐기),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및 반송업체, 전화상담 업체, 전산처리 및 개발·유지·보수 업체, 권원조사/권리조사 업체, 신용조사/채권추심업체, 결제대금출금 업체, 예금주성명확인 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사은품·판촉물 발송업체, 법무사, 법무/회계 법인 등, 녹취록 작성업체, 녹취서버 운영업체, SMS발송업체, 자동차 구매/이전/등록 업체, 근저당설정/해지 업체, 자동차대출 연계상품 카드업체,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 자동차 등 할부(대출) 중개·알선 관련 업무 수탁자, 자동차 현장조사 업체, 승계대행업체,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서비스센터, 사고대차지급(렌트)업체, 자동차 등 리스 중개·알선 관련 업무수탁자, 자동차 탁송업체, 리스 반납 차량 선매입업체, 자동차보험 및 사고관리업체, 과태료/범칙금 관련 기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받는 자, 범죄행위 관련 수사·조사 기관,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제3자 제공 및 수탁 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kdb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자서서류대행, 차량 등 담보물관리/평가, 유가증권 평가, 본인인증, 신청서 등 문서 관리(입력·스캔·보관·폐기),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및 반송, 전화상담, 전산처리 및 개발·유지·보수, 권원조사/권리조사, 신용조사/채권추심, 결제대금출금, 예금주성명확인, 세금계산서 발행, 사은품·판촉물 발송, 법조치 업무, 법률/회계 자문 등, 회계감사, 녹취록 작성, 녹취서버 운영, SMS발송, 자동차 구매/이전/등록, 근저당설정/해지, 자동차대출 연계상품 카드발급, 자동차 구입·리콜·금리정산, 자동차 등 할부(대출) 중개·알선, 자동차 현장조사, 승계대행, 자동차 유지관리, 사고대차지급, 자동차 등 리스 중개·알선, 자동차 탁송, 리스 반납 차량 처리, 자동차보험 및 사고관리, 과태료/범칙금 처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범죄행위 관련 수사·조사 협조, 금융사고방지 등을 위한 공공기관 자료제출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p>본인 겸 채무자</p>	<p>성명 : 서명/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_____)</p>
<p>연대보증인</p>	<p>성명 : 서명/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_____)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금융)거래라 함은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카드, 투자,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 본 동의서는 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이 거절되는 경우 그 시점으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등과 관련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상품·서비스 소개 및 권유, 사은행사, 판촉행사 등의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사 및 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계약 종료 시 까지

- 이용권유방법
본인은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등을 받기위해 다음의 권유방법에 동의합니다.

- (전부동의 (전화 문자 이메일 서면 , 동의하지 않음)
- ※ 위 내용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상품 변경 안내 등 필수고지 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부수업무와 관련된 마케팅활동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계약 종료 시 까지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 검 채 무 자	성명 :	서명/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2.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업무제휴를 체결한 제휴 카드사에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삼성카드(주)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신용카드사의 카드상품 소개 및 이용권유 등의 마케팅활동(TM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2년 까지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손해 및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권유 및 판매 등의 마케팅활동(TM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2년 까지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 검 채 무 자	성명 :	서명/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수임인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_____ 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및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수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 대리 행위를 승낙함)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각 1통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정·등본 발급을 청구하는 사무일체 관한 것

- 1. 채 권 자 : 산은캐피탈주식회사
- 2. 채 무 자 :
- 3. 연대보증인 :
- 4. 대출일자 : 년 월 일
- 5. 대출번호 :
- 6. 대출원금 : 금 원정
- 7. 대출원리금(총액) : 금 원정
- 8. 이 자 율 : 연 %, 이자지급일 :

변제 년 월 및 회차						월 불입 일	매월 변제원리금		
년	월(제	회)부터	년	월(제	회)까지	일	금	원정	
년	월(제	회)부터	년	월(제	회)까지	일	금	원정	

- 9. 보증채무 최고액 : 금 원정
- 10. 채무금의 지불장소는 채권자의 주소 및 사무소로 한다.
- 11. 기한외이익 상실 : 채무이행을 지체할 때
- 12.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 13.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본건 약정(할부금융·일반대출약정서)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채무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없음을 승낙한다.
- 14.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한다.
- 15. 지연배상금 : 지급지체시 연 % 비율에 의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액면	금	원정	수취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
발행일	년 월 일	지급기일	일	발행인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위임인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위임인	주소	위임인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약속어음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금	원정	주소	발행인	(인)
₩		주소	발행인	(인)
발행일		주소	발행인	(인)
지급기일		주소	발행인	(인)
발행지		주소	발행인	(인)
지급지		주소	발행인	(인)
지급장소		주소	발행인	(인)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	------	------	-------------------------

설정 대상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채무자	성명(명칭)	
	주 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 소	

설정 금액	<input type="checkbox"/> 채권액 <input type="checkbox"/> 채권최고액 <input type="checkbox"/> 담보가액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상 호 :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사업자번호 : 202-81-50051

20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

위임장

수 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일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 기재 자동차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저당권 설정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저당물건 목록]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원동기형식	연식	사용본거지

계약번호 : _____

계약일자 : 20____년 ____월 ____일

인감대조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명	(인)	
채무자	주소		
	성명	(인)	
근저당권 설정자	주소		
	성명	(인)	

★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본약관(거래 형태별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카드회원거래약관 등)과 이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고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여신금융협회 약관 보고 접수 일자 : 2016년 3월 31일]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기본약관(거래 형태별로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카드회원거래약관 등을 말한다)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2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모든 계약서 및 거래약정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____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권최고액

- 가. 금 _____ 원정 ()
-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한다.
- 다. 환율특약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정한 경우에 적용함)
 - (1) 위 외화금액의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_____ 에 의하기로 한다.
 - (2) 위 외화금액을 _____ 년 ____ 월 ____ 일자 _____ 을 ____ 대 _____ 로 환산하면 금 _____ 원정이 되는 바, 이후 근저당권에 의한 변제 시에 등 환율이 변동될 때에는 그 변동된 환율에 의하기로 한다.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_____ 에서 정한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2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 ①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중물에도 미친다.
- ② 근저당 물건의 실체가 별지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않은 부분이나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실제물건 위에 그대로 미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요청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하며, 또 채권자가 이러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없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설정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조 추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 ① 설정자는 근저당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한다)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물건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 ② 근저당 목적이 재단인 경우에 설정자가 그 재단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재단에 관한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공작물·기계기구·차량 선박 등의 물건과 지상권·전세권·임차권·상표권·광업권·기타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재단에 속하게 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 ③ 설정자는 제2항의 경우 그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채권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 ④ 근저당권의 목적이 공장인 경우에 설정자는 현재 공장에 속하고 있거나 장차 설치될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을 등기신청을 위해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 담보보존의무

- ① 설정자는 저당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지상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가등기 등 각종 권리의 설정과 등기·등록상의 변경 또는 구조·형질의 변경, 분할·병합, 형상의 변경 및 정상운전상태의 저해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② 설정자는 보험계약의 소멸 또는 근저당 물건이나 권리가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보험료·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변제가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이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5조 보험계약

- ①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채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을 계속할 때에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절차를 이행하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때까지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 ② 설정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에 기인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그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은 다음 채권자에게 보험증권과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하기로 한다.



- ③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이외의 저당물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하며, 이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제2항의 절차를 밟기로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 내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채권자와 설정자는 상호간에 인정하는 채권보전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설정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한다.
- ⑤ 설정자가 이 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설정자는 이의가 없기로 한다.
- ⑥ 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보험료의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연 %의 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더하여 곧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⑦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화재 기타의 이재 또는 이에 부대되는 파급적인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사고후 처리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인한 보험금을 채권자가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제기도래여부 불구하고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와 비용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 ①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이 토지위의 정착물만일 경우 그 토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위에도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 등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 및 그 권리 위의 근저당권의 존속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취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하며, 지상의 정착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상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 ⑤ 근저당 물건이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등으로 변제하고도 채무가 남는 경우에 설정자가 곧 지상의 정착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 처분은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 근저당 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 조사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8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한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구분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 담보의 변경과 대위변제

- ① 채권자는 채무관계자의 변동, 담보물 가격의 변동 등 채권보전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담보 또는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 ② 설정자는 변제 등에 따른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채권전액을 변제받은 다음에 변제 받기로 하며,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무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0조 다른 담보약정과와의 관계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나 보증은 이 설정계약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설정계약의 피담보 채무가 더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설정자가 장래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거나 보증을 할 경우에도 같기로 한다.

제11조 근저당권의 실행

- ①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저당권 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하기로 하며, 만약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곧 추가 변제하기로 한다.
- ②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기로 한다.
- ③ 설정자는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경우에 이에 따른 근저당권의 제3자 앞 이전을 승낙하기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의 처분 관리 등에 필요한 협력을 다 하기로 한다.

제12조 채무자의 연대채무

채무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설정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승낙한다.

제13조 특별조건

[근저당물건 목록]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원동기형식	연식	사용본거지



- ③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이외의 저당물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하며, 이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제2항의 절차를 밟기로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 내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채권자와 설정자는 상호간에 인정하는 채권보전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설정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한다.
- ⑤ 설정자가 이 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설정자는 이의가 없기로 한다.
- ⑥ 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보험료의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연 %의 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더하여 곧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⑦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화재 기타의 이재 또는 이에 부대되는 파과적인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사고후 처리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인한 보험금을 채권자가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제기도래여부 불구하고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와 비용에 임으로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 ①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이 토지위의 정착물만일 경우 그 토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위에도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 등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 및 그 권리 위의 근저당권의 존속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취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하며, 지상의 정착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상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 ⑤ 근저당 물건이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등으로 변제하고도 채무가 남는 경우에 설정자가 곧 지상의 정착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 처분은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 근저당 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 조사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8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한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구분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 담보의 변경과 대위변제

- ① 채권자는 채무관계자의 변동, 담보물 가격의 변동 등 채권보전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담보 또는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 ② 설정자는 변제 등에 따른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채권전액을 변제받은 다음에 변제 받기로 하며,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무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0조 다른 담보약정과 관계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나 보증은 이 설정계약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설정계약의 피담보 채무가 더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설정자가 장래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거나 보증을 할 경우에도 같기로 한다.

제11조 근저당권의 실행

- ①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저당권 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하기로 하며, 만약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곧 추가 변제하기로 한다.
- ②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기로 한다.
- ③ 설정자는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경우에 이에 따른 근저당권의 제3자 앞 이전을 승낙하기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의 처분 관리 등에 필요한 협력을 다 하기로 한다.

제12조 채무자의 연대채무

채무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설정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승낙한다.

제13조 특별조건

[근저당물건 목록]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원동기형식	연식	사용본거지

